

공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-187호

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6호(2005.03.17)로 종로4·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79호(2006.05. 11)로 도시관리계획 (종로4·5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결정된 종로구 종로6가동 82-1 일대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(도시계획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3월 28일

종 로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08. 3. 29. ~ 2008. 4. 11. (14일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(☎ 731-1421~4)

다. (가칭)종로6가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안)

1) 구 역 명 : (가칭)종로6가도시환경정비구역

2) 사업의 명칭 : 종로6가도시환경정비사업

3)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 역 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(㎡)
신규	종로6가도시 환경정비구역	종로6가동 82-1 일대	12,556.3 (감143.8)	9,665.4	2,890.9 (증22.9)

※ 구역경계 조정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구적오차 수정

4)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

- 공원 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종로6가동 82-1 일대	2,861.0	증)29.9	2,890.9	지적현황측량 에 의한 구적오차 수정

※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79호(2006.5.11) 도시관리계획(종로4·5가
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된 사항임

5) 건축계획

위 치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율(%)	연면적(㎡)	높이(m) (지상/지하)	주용도
종로6가동 82-1 일대	9,665.4	60이하	745이하	116,565.83	90이하 (26/6)	공동주택 판매·업무

6) 관련도면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
7) 지정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
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2005.2.5)에 의거 효율적인
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
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.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규정에 의
한 지구단위계획구역임)